

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01년 10월 24일

○ 회부일자 : 2001년 10월 25일

3. 제안이유

여성공무원의 출산 전후 충분한 휴식기간 부여로 모자건강의 증진과 출산의 부담으로 인한 사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출산휴가 기간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4. 주요골자

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써
⇒ 출산 전후 60일에서 출산 전후 90일로 연장 허가

5. 검토의견

○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

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라 여성공무원의 출산에 따른 충분한 휴식기간 부여와 모자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출산휴가 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,

동 조례 제23조 제2항, 제3항, 제4항에 여자공무원으로 표기되어 있는 바,

여자는 나이가 어리건 많건 상관없이 사용하고, 여성은 성적으로 여성임을 느낄 수 있는 정도의 나이를 먹은 여자를 이르는 말로서,

근로기준법 제72조(임산부의 보호) 및 제73조(육아시간)의 규정 중 여자근로자를 여성근로자로 개정하였을 뿐 아니라 각종 법령의 여자를 여성으로 정정하는 추세에 있어,

동 조례 제23조의 각 항의 「여자공무원」을 「여성공무원」으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,

출산 휴가기간 확대에 따른 업무공백이 없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사료됨.

붙 임 :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